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247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10월 16일

발 의 자: 김 경, 김기덕, 박승진,
봉양순, 유정희, 이병도,
이승미, 이용균, 이원형
의원(9명)

찬 성 자: 김규남, 송경택 의원(2명)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의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의 개인형 이동장치 주·정차 위반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이용자 등의 안전 증진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을 적극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주·정차 위반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14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등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제15조로 하고,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주·정차 위반에 관한 사항) 시장은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를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하여 법 제35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4조(주·정차 위반에 관한 사항)</u> <u>시장은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u> <u>를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u> <u>하여 법 제35조에 따른 조치를 할</u> <u>수 있다.</u>
<u>제14조</u> (생략)	<u>제15조</u> (현행 제14조와 같음)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를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조치가 필요함에 따라 제14조(주·정차 위반에 관한 사항)를 신설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김중헌
추 계 분 석 관	김지혜

☎ 02-2180-7953
e-mail : kjh0123@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